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승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7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박승진 의원(1명)
찬성자: 고광민, 김성준, 김영철,
김원태, 서상열, 서준오,
송도호, 유정희, 이영실,
이용균, 임종국, 최기찬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그 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(안 제24조의2 제1항 신설)
- 나.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(안 제24조의2 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등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)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그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4조의2(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) ①</u>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그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<u>②</u>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4조의2(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)를 신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그 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예산을 기편성(도시재창조과¹⁾)하여 시행하고 있어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제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2025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예산서

<서울시 공동이용시설 관리 현황>

(단위 : 천원)

사업	사업 예산	사업추진 세부내용
공공이용시설 관리	4,500	관리운영비 ▶ 1,500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▶ 3,000